

독일의 폭발물 및 폭발물 원료물질 관련 법령 및 최근 관리동향

- 2010년 개정 폭발물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정보신청기관 : 국립환경과학원

I. 서론

독일의 폭발물 및 폭발물 원료물질 관련 법규 (Sprengstoffrecht)는 폭발물질(Explosivstoffen)에 관계되는 모든 법규범의 총체로서 연방법률인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SprengG(Sprengstoffgesetz)), 동법의 이행을 위한 하위의 법규 명령으로서 제1차 폭발물법 시행령,¹⁾ 제2차 폭

발물법 시행령,²⁾ 제3차 폭발물법 시행령,³⁾ 폭발물법 비용규정⁴⁾ 및 민간의 목적을 위한 폭발물질의 판매와 통제에 관한 규정을 조율하기 위한 이사회⁵⁾의 지침 93/15/EWG(유럽경제공동체)에 따른 꽃불제조물체 및 특정 탄약의 개념에 관한 집행위원회의 지침⁶⁾을 포함한다. 아울러 여기에는 이사회⁷⁾의 지침 93/15/EWG,⁶⁾ 유럽의회 및 이사회⁸⁾의 지침 2007/23/EG,⁷⁾ 집행위원회의 지침 2008/43/EG,⁸⁾ 그 외 법적구속



- 1) Ers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1. SprengV) vom 31. Januar 1991 (BGBl. I S. 169).
- 2) Zwei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2. SprengV) vom 10. September 2002 (BGBl. I S. 3543).
- 3) Dritte 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3. SprengV) vom 23. Juni 1978 (BGBl. I S. 783).
- 4) Kostenverordnung zum Sprengstoffgesetz (SprengKostV) vom 31. Januar 1991 (BGBl. I S. 216).
- 5) Richtlinie 2004/57/EG der Kommission zur Definition pyrotechnischer Gegenstände und bestimmter Munition für die Zwecke der Richtlinie 93/15/EWG des Rates zur Harmonisierung der Bestimmungen über das Inverkehrbringen und die Kontrolle von Explosivstoffen für zivile Zwecke.
- 6) 민간의 목적을 위한 폭발물질의 판매와 통제에 관한 규정을 조율하기 위한 이사회⁵⁾의 지침(Richtlinie 93/15/EWG des Rates zur Harmonisierung der Bestimmungen über das Inverkehrbringen und die Kontrolle von Explosivstoffen für zivile Zwecke). 내용은 <http://eur-lex.europa.eu/> 참조.
- 7) 꽃불제조물체의 판매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Richtlinie 2007/23/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as Inverkehrbringen pyrotechnischer Gegenstände).
- 8) 이사회⁷⁾의 지침 93/15/EWG에 따른 민간의 목적을 위한 폭발물질의 식별과 추적을 위한 절차의 도입에 관한 집행위원회 지침(Richtlinie 2008/43/EG der Kommission zur Einführung eines Verfahrens zur Kennzeichnung und Rückverfolgung von Explosivstoffen für zivile Zwecke gemäß der Richtlinie 93/15/EWG des Rates).

맞춤형 법제정보

력을 갖는 각종 행정규칙들,⁹⁾ 직무상 승인된 기술규정 및 지침들,¹⁰⁾ 또한 BAM(원료연구 및 심사에 관한 연방기구, Bundesanstalt für Materialforschung und -prüfung)¹¹⁾이 공표한 규정도 해당한다. 이상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폭발물 및 폭발물 원료물질 관련 법규는 각종 기술적 규정 및 지침들과 더불어 광범위한 범위에 이르지만, 이하에서는 그 근간이 되는 폭발위험물질에 관한 법(이하에서는 “폭발물법”이라 함)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II. 2010년 폭발물법의 주요 내용

1. 폭발물법의 연혁

폭발물 및 폭발물 원료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법규인 폭발물법은 1969년 8월 25일¹²⁾ 최초 법률의 형태로 공포되어 197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 이후 이 법은 1976년 9월 13일 공포된 동일법률명의 폭발물법¹³⁾에 의해 폐기되었으며, 새로운 폭발물법은 1986년 개정¹⁴⁾을 거친 후, 2002년 9월 10일자 전부개정¹⁵⁾에 의해 현행과 같은 틀을 정비하였다. 2002년 폭발물법은 그 개정과정에서 규범 및 기술규정과 정보사회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범주에서의 정보절차에 대한 1998년 7월 22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34/EG¹⁶⁾상의 의무를 고려하면서 민간의 목적을 위한 폭발물질의 판매와 통제에 관한 규정을 조율하기 위한 이사회 지침 93/15/EWG을 국내법으로 보



9) 예를 들어, 폭발물법 일반 행정규칙(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Sprengstoffgesetz (SprengVwV)), 폭발물법 제5조 2항 4호에 따른 거부사유의 심사에 관한 일반 행정규칙(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für die Prüfung des Versagungsgrundes nach § 5 Abs. 2 Nr. 4 des Sprengstoffgesetzes) 및 폭발물법에 따른 교육과정의 승인과 이행을 위한 원칙(Grundsätze für die Anerkennung und Durchführung von Lehrgängen nach dem Sprengstoffgesetz).

10) 예를 들어, 폭발위험물질의 보관그룹에의 편입에 관한 지침(SprengLR 010 - Richtlinie für das Zuordnen explosionsgefährlicher Stoffe zu Lagergruppen), 기타 폭발위험물질의 보관그룹에의 편입에 관한 지침(SprengLR 011- Richtlinie für das Zuordnen sonstiger explosionsgefährlicher Stoffe zu Lagergruppen), 폭발물질 및 (폭발성) 첩화수단을 위한 창고의 건축방식 및 설비에 관한 지침(SprengLR 210 - Richtlinie Bauweise und Einrichtung der Lager für Sprengstoffe und Zündmittel) 등.

11) <http://www.bam.de/de/index.htm> 참조.

12)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Sprengstoffgesetz) vom 25. 8. 1969 (BGBl. I S. 1358).

13)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Sprengstoffgesetz) vom 13. 9. 1976 (BGBl. I S. 2737).

14)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Sprengstoffgesetz) vom 17. 4. 1986 (BGBl. I S. 577).

15)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Sprengstoffgesetz) vom 10. 9. 2002 (BGBl. I S. 3518).

16) Richtlinie 98/34/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2. Juni 1998 über ein Informationsverfahren auf dem Gebiet der Normen und technischen Vorschriften und der Vorschriften für die Dienste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Abl. EG Nr. L 204 S. 37).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회의 2002년 9월 1일자 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Sprengstoffgesetzes und anderer Vorschriften (2. SprengÄndG) 1쪽 참조.

충하고 있다. 이 법은 2009년 8월 11일 최종 개정¹⁷⁾의 형태로 2010년 3월 1일 이후 효력을 발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주요내용

1) 구성

현행 폭발물법은 총 10장 5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법의 적용범위, 여타 새로운 폭발위험물질에 대한 적용, 개념규정 등 일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장은 영리활동 영역에서의 교류와 거래에 관하여, 제3장은 창고(예의 보관), 제4장은 책임자와 그 의무에 관하여 규율한다. 제5장은 비영리 활동의 영역에서의 교류와 거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제6장은 교류와 거래의 감시에 관한 규정, 제7장은 취소 및 철회, 관할청, 비용 등에 관한 기타 규정, 제8장은 형사처벌 및 벌금규정으로 대별된다. BAM(원료연구 및 심사에 관한 연방기구)에 관하여는 제9장에서 그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10장은 법의 효력발생에 관한 경과규정을 담고 있다.

2) 각 장별 주요내용

(1) 제1장

• 적용범위

폭발물법은 예외적이지 않은 열에 의한, 기계적인 또는 기타 요구에 의하여 폭발에 이를 수 있는(폭발위험물질) 고형 또는 액체물질의 교류, 거래 및 반입과 준비를 규율하는 바, 원칙적으로 폭발물질은 사전에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만 독일 내에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제5장의 적용범위에서 다른 목적과 결합된 폭발위험물질에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폭발위험물질은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Nr. 1907/2006에 따른 심사방식의 확정을 위한 2008년 3월 30일자 집행위원회의 규정 Nr. 440/2008의 부록 중 A.14에 따른 심사절차를 실행하면서 그때그때 유럽공동체 관보 최신판에서 폭발위험물질로 입증된 것들을 의미한다 (제1조).

• 폭발물질과 관련한 주요 개념정의

- 폭발물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폭발물



17) Gesetz über explosionsgefährliche Stoffe (Sprengstoffgesetz) vom 11. 8. 2009 (BGBl. I S. 2723,2727).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회의 2009년 7월 17일자 Viertes Gesetz zur Änderung des Sprengstoffgesetzes 참조. 이 법은 폭발제조물질의 판매에 관한 2007년 5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7/23/EG, 이사회의 지침 93/15/EWG에 따른 인간의 목적을 위한 폭발물질의 식별과 추적을 위한 절차의 도입에 관한 2008년 4월 3일자 집행위원회 지침, 승인과 직업자격에 관한 2005년 9월 7일자 연방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 2005/36/EG (Abl. L 255 vom 30.9.2005, S. 22) 및 국내시장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2006년 12월 12일자 연방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6/123/EG (Abl. L 376 vom 27.12.2006, S. 36)의 이행법률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맞춤형 법제정보

질(Explosivstoffe)은 동법에 대한 부록 III의 폭발물질목록에 열거된 물질¹⁸⁾과 인간의 목적을 위한 폭발물질의 판매와 통제에 관한 규정을 조율하기 위한 1993년 4월 5일자 이 사회의 지침 93/15/EWG에 따라 그때그때 폭발물질로 여겨지거나 구성방식 및 효력에 있어 이에 유사한 물질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폭발물질목록에는

- 꽃불제조결합(pyrotechnische Sätze)은 꽃불 제조물체에서 그 이용에 또는 꽃불제조효과를 일으키는데 특정한 폭발위험물체 또는 물체의 혼합을 뜻한다.
- 꽃불제조물체(pyrotechnische Gegenstände)는 폭발위험물체 또는 물체의 혼합에 포함

된 에너지를 이용하여 빛효과, 음향효과, 연기효과, 안개효과, 열효과, 압력효과 또는 운동효과를 일으키는데 특정되어 있는 향락의 또는 기술적 목적을 충족하면서 이러한 물질에 포함된 물체의 총체이다. 또한 동법에 대한 부록 IV에 언급된 물체¹⁹⁾는, 그것이 지침 93/15/EWG의 부록 II에 따른 유럽공동체-디자인심사의 이행과 관련하여 언급된 기관의 결정에 의해 폭발물질에 대한 유럽공동체-디자인심사에 종속되지 않는 한, 꽃불제조물체이다.

- (폭발성) 점화수단(Zündmittel)은 폭발위험 물질을 포함하면서 그 유형에 따라 폭발물질 또는 도폭선의 폭발성 작동에 특정되어



18) 부록 III은 제3조 1항 1호에 따른 폭발물질목록에 해당하며, 이는 세부적으로 4개의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첫번째 항목인 제1조 2항 및 3항과 지침 93/15/EWG상의 폭발물질과 물체에는 과염소산암모늄(Ammoniumperchlorat, UN-Nr. 0402), 건조상태 또는 양의 10% 이하 수분을 함유한 피크린산암모늄(Ammoniumpickrat, UN-Nr. 0004), 양의 20% 이상 수분 또는 알코올/수분 혼합물에 적셔진 아자이드화납(Bleiazid, UN-Nr. 0129), 양의 25% 이상 알코올에 적셔진 니트로셀룰로스(Nitrozellulose, UN-Nr. 0342), 건조상태 또는 양의 30% 이하 수분을 함유한 트리나이트로톨루엔(Trinitrotoluol, UN-Nr. 0209) 외 100여종이 해당한다.

두번째 항목인 운반에 민감하고, 그에 따라 UN-번호가 없는 제1호 a)에 따른 폭발물질에 동등한 폭발물질(지침 93/15/EWG 제1조 5항)에는 건조상태나 양의 20% 이상 수분 또는 알코올/수분 혼합물을 함유한 아자이드화납(Bleiazid), 건조상태나 양의 150% 이상 수분을 함유한 옥소젠(Cyclotetramethylentranitramin/HMX/Oktogen) 등 20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세번째 항목은 제3조 1항 1호에 따른 폭발물질 및 물체로 이들은 배타적으로 군사적 이용에 이용되지 않는 한도에서(제1조 3항, 지침 93/15/EWG의 밀줄) 의미를 갖는다. 여기에는 비활성 머리부분을 장착한 로켓(Raketen, UN-Nr. 0502), 유동성(액상)발포제인 로켓모터(Raketenmotore, UN-Nr. 0395, 0396), 고형발포제(Treibstoff, UN-Nr. 0498, 0499, 0501), 액상발포제 Treibstoff, UN-Nr. 0497) 등 20가지가 해당된다.

네번째 항목인 배타적 군사적 이용목적의 제3조 1항 1호에 따른 폭발물질 및 물체로, 이에 관하여는 제1조 4항 4호에 따른 활동에 있어 법이 적용된다. 여기에는 폭발물질을 실은 어뢰의 탄두(Gefechtsköpfe, UN-Nr. 0221), 폭발력 있는 신관(Zünder, UN-Nr. 0106, 0107, 0257, 0367), 폭발력 있고, 안전장치를 장착한 신관(Zünder, UN-Nr. 0408, 0409, 0410) 등 13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19) 부록 IV는 지정된 기구의 결정에 의해 폭발물질에 편입될 수 있는 물체(제3조 1항 2문, 지침 2004/57/EG의 부록 II)를 지정하고 있다. 상세하게는 점화기(Anzünder, UN-Nr. 0121, 0314, 0315, 0325, 0454), 점화선인 점화기(Anzünder, UN-Nr. 0131), 폭발물질을 가진 물체(Anzünder, UN-Nr. 0349, 0353), 폭발력 없는 신관(Zünder, UN-Nr. 0316, 0317, 0368)이 열거되어 있다.

있는 물질이다.

- (비폭발성) 점화수단(Anzündmittel)은 폭발 위험물질을 포함하면서 그 유형에 따라 폭발물질 또는 꽃불제조물체의 비폭발성 작동에 특정되어 있는 물질이다.
- 폭발부속물(Sprengzubehör)은 그 유형에 따라 폭발을 작동하는데 또는 폭발의 작동에 필요한 장치에 특정되어 있으면서 폭발위험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물질과 폭발에 이용되는 폭발위험물질 또는 폭발물질의 축전기 및 혼합 축전기를 포함한다.
- 꾸준히 보관, 감시 또는 관리되지는 않았던 탄약 또는 폭발가능한 전쟁무기는 불발탄(Fundmunition)에 해당한다.

(2) 제2장

폭발물법은 제조업자, 채석업자 등과 같은 영리활동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바, 그 반입, 통과 및 기록의무에 관한 규정이 제2장을 구성한다. 영업상, 독자적으로 경제사업 또는 농업이나 산림업 관련 기업에 종사하거나 이러한 직업군의 피고용자가 폭발위험물질을 다루고자 하거나 폭발위험물질을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요한다. 이 때 폭발위험물질의 제조, 처리, 가공을 위한 허가 또는 재획득을 위한 허가는 허가와 관련된 폭발위험물질을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허가를 포함한다. 꽃불제조물체의 제조를 위한 허가는 꽃불제조탄약을 제조하는 내용의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에서는 제8조에서 규정하는 허가의 예외적 거부사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허가의 거부(제8조)

- 신청자 또는 기업, 지점 또는 비독자적 지점의 경영을 일임하는 자가 신뢰할만하지 못하다는 점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 허가가 거부된다. 여기에서 언급된 신뢰성을 결한 자는 필요한 전문지식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필요한 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자 또는 21세 이하의 자를 의미한다. 이 중 필요한 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자라는 요건은 폭발위험물질의 거래를 직접 행하지 않는 신청자나 기업, 지점 또는 비독자적 지점의 경영을 일임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될 수 없다.
- 신청자나 기업, 지점 또는 비독자적 지점의 경영을 일임하는 자가 기본법 제116조에 따른 독일인이 아닌 경우 또는 신청자가 동법의 효력범위에서 자신의 주소 내지 거소뿐만 아니라 영업소재지를 갖지 않은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 법인에 있어 법,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대표에 임명된 자가 폭발위험물질의 교류 또는 거래의 총지휘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제8조 1항 1호를 근거로 신청자에 대하여 이자의 신뢰성 결여를 이유로만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8a조는 신뢰성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 신뢰성을 결여한 자(제8a조 1항)

맞춤형 법제정보

- 중죄 또는 기타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 고의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최종판결을 받은 자가 최종판결의 법적 효과 발생 이후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사실관계에 있어 이 자가

- ① 동법에 따른 폭발위험물질을 남용하여 또는 부주의하게 이용할 것이라는 점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
- ② 폭발위험물질을 부주의 또는 적합하지 않게 다루거나 이를 주의를 기울여 보관하지 않을 것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
- ③ 폭발위험물질에 대한 사실상의 권한행사가 인정되지 않는 자에게 폭발위험물질을 양도할 것이라는 점이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경우.

• “일반적으로” 신뢰성을 결한 자(제8a조 2항)

- 고의의 범죄행위, 폭발위험물질, 무기나 탄약의 교류와 관련한 과실의 범죄행위, 또는 동법에 따른, 무기법, 전쟁무기의 통제에 관한 법 또는 연방수렵법에 따른 범죄행위를 이유로 자유형, 소년형, 60일수 이상의 벌금형 또는 2회 이상 소액벌금형에 처하는 최종판결을 받았거나 소년형의 집행이 유예되었던 자가 최종판결의 법적 효과 발생 이후 아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단체법에 따라 기구로서 명확하게 금지되어 있거나 단체법에 따른 명확한 활동금지에 종속된 단체에 또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46조에 따라 그 위헌성을

확정한 정당에 구성원이었던 자가 탈퇴 이후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사실관계에 있어 이 자가 개별적으로나 연합의 구성원으로서

- ① 헌법위반이나
- ② 범국민적 타협의 사상에 반하는, 특히 국민의 평화적 공생에 반하는 행위를 지향하거나,
- ③ 폭력 또는 폭력행사를 위한 준비행위를 함으로써 연방 독일의 대외 이해관계를 위태롭게 하려고 노력하거나, 이를 원조하거나, 또는 지난 5년간 노력했거나 원조했다는 점에 관련성이 드러나는 경우,

- 지난 5년 내에 1회 이상 폭력행위를 이유로 판사의 허가에 따라 경찰의 예방적 보호조치에 처했던 자,

- 반복적으로 또는 중대하게 제1호 c에 언급된 법(동법, 무기법, 전쟁무기의 통제에 관한 법, 연방수렵법)의 규정들이나 노동보호법, 화학약품법, 유해물질법, 임직시온보호법, 하천보호법 내지 광산법을 위반했던 자.

(3) 제3장

제 17조는 폭발위험물질이 경제사업 또는 농업이나 삼림업 관련 기업의 범주에서 또는 피고용자가 이에 종사하는데 있어 영업상 목적으로 보관되어야 하는 창고의 설비와 경영 및 이러한 창고의 조달과 경영상의 본질적 변경이 허가를 요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제1항). 그 외에 제2항은 허가의 거부사유, 제3항은 허가의 내

용상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4) 제4장

- 제4,5,6장상의 책임 있는 자에는(제19조)
 - 허가소지자 또는 동법 또는 제4조를 근거로 발령된 법규명령에 따라 허가 없이 폭발위험물질의 교류 내지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업의 소유자, 제8조 3항의 경우에는 언급된 활동의 총지휘업무를 위임 받은 자,
 - 기업, 지점 또는 비독자적 지점의 경영을 일임하는 자,
 - 감독자, 특히 경영부서의 장, 폭발의 권한 있는 자, 경영책임자, 준비제거에 있어서의 전문기술 감독인, 창고관리인 및 폭발위험물질의 운반, 타인에의 양도 또는 타인으로부터 폭발위험물질의 수령에 선임된 자 (이에 해당하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자격증명서(Befähigungsschein)를 소지한 때에만 그 활동이 허용된다.),
 - 광산통제권한에 종속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제1,2호에 언급된 자 외에
 - ① 폭발위험 물질을 수령, 양도, 보관, 운반 또는 이용하는 모든 자의 감독에 선임된 자(이에 해당하는 자는 제20조에 따른 자격증명서를 소지한 때에만 그 활동이 허용된다.),
 - ② 폭발위험물질의 타인에의 양도에 또는 타인으로부터 폭발위험물질의 수령에 선임



20) 허가가 생명, 신체 내지 재산에의 위험 또는 제3자에의 현저한 손해 내지 부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한, 내용상으로 및 공간적으로 제한되고, 부담과 결합될 수 있다.

된 자,

- ③ 사업장 내부에서 수령, 양도, 보관, 운반 또는 이용에 있어 폭발위험물질에 대한 사실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해당된다.
- 사업장 외부에서 폭발위험물질의 교류 및 거래에 있어서는 더 나아가 폭발위험물질에 사실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자가 책임을 진다.

(5) 제5장

폭발물법은 영리활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비영리활동의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바, 제27조 1항에 따라 제7조 1항에 설명된 경우와 다른 경우에 폭발위험물질을 획득하거나 폭발위험물질을 다루고자 하는 자는 획득 및 교류를 위한 허가를 요한다. 이에 대하여 제27조 3,4항은 그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 허가의 거부사유(제27조 3항)
 - 신청자에게 제8조 1항에 따른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
 - 신청자가 의도된 활동에 요구되는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 제27조 2항 2문²⁰⁾에 설명된 법익의 보호를 위한 내용상 제한 또는 부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허가가 “거부된다.” 두 번째 사유는 폭발제조물체의 획득 및 이용을 위한 허가

맞춤형 법제정보

에 적용되지 않는다.

- 허가의 거부사유(제27조 4항)

- 신청자가 기본법 제116조상의 독일인이 아니거나
- 신청자가 최소 3년 전부터 동법의 효력범위 내에서 자신의 주소 내지 거소를 중단 없이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허가는 “거부될 수 있다”.

(6) 제6장

폭발물법 제30조는 폭발위험물질의 교류 및 거래가 관할행정청에 의한 감시에 따른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폭발위험물질을 교류 또는 거래하는 기업의 소유자, 기업, 지점 또는 비독자적 지점의 경영을 일임하는 자 및 제27조에 따른 허가를 필요로 하는 자는 관할행정청에 법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제31조 1항).

관할행정청으로부터 감시업무를 위임 받은 자는 토지, 영업시설, 영업소, 운송수단 및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의 긴급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한 정보제공의무자의 주거공간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심사와 검열을 행하며, 정보제공의무자의 사업서류를 열람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동 위임자는 감시에 필요한 한에서 수령증에 반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샘플을 요구하거나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제 31조 제2항).

(7) 제7장

폭발물법 제34조는 허가의 취소와 철회, 제35

조는 허가결정 및 자격증명서의 분실과 효력상실, 취소 및 철회의 효과, 제36조는 관할행정청, 제37조는 비용, 제39조는 법규명령의 발령에 있어서의 참여, 제39a조는 신고기관에 대한 그리고 신고기관으로부터의 정보전달을 규율하고 있다. 이 중 허가의 취소사유와 일반 철회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취소사유(제34조 1항)

- 동법에 따른 허가(Erlaubnis), 증명서(Zulassung) 및 자격증명서는 그것이 거부되었어야만 하는 경우에 취소된다.

- 일반 철회사유(제34조 2항)

- 동법에 따른 허가, 증서 및 자격증명서는 거부에 이를 수 있어야만 하는 추후의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경우에 철회된다. 언급된 권한내용은 -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 내용상 제한이 지켜지지 않는 때에 철회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허가는 제8조 1항 2호 b를 근거로(필요한 인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자) 철회되어서는 안 된다.

(8) 제8장

폭발물법 제40조는 처벌가능한 교류 및 거래, 그리고 처벌가능한 반입의 예, 제41조는 질서법 위반의 예, 제42조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 처벌가능한 보호규정의 침해의 예를 열거하고 있다. 제43조는 이상 제40조에서 제42조상의 범죄행위의 경우 몰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9) 제9장

폭발물법 제44조는 경제기술부의 업무범위에서 연방직속의 공법상 권리능력 없는 기구인(제1항) 원료연구 및 심사에 관한 연방기구의 법적 지위에 관해, 제45조는 동 기구의 임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원료연구 및 심사에 관한 연방기구는 폭발물질(폭발제, 발포제)의 디자인심사증명서의 수여 및 2007/23/EG에 따른 폭발제조물체 관련 적합성평가절차의 이행에 관한 지침 93/15/EWG의 영역에서 지정된 기구(식별번호 0589, Kenn-Nr. 0589)이다.²¹⁾ 동 기구는 폭발물법에 따른 폭발물질에 관한 이용규정의 확정과 인식번호의 승인을 담당한다. 또한 폭발물법에 따라 폭발부속물 및 화학공업의 폭발위험물질(기타 폭발위험물질)을 허용할 것인지 결정하며, 폭발위험물질의 보관그룹(Lagergruppe)과 융화성그룹(Verträglichkeitsgruppe)에의 분류를 관할한다.

(10) 제10장

경과규정을 담고 있는 폭발물법 제10장(제46조-제53조)에서는 제49조에 따른 기타 적용가능한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동법의 규정에 따르는 영업에 대하여는 동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거래(규제)법(Gewerbeordnung)이 적용될 수 있다.



21) BAM에 관하여 이하 상세자료는 http://www.bam.de/de/service/amt_mitteilungen/sprengstoffrecht/index.htm 참조.

Ⅲ.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자면, 독일의 폭발물법은 폭발위험물질의 교류와 거래에 대한 관리 및 규제를 목적으로 하여 영리활동의 영역에서만 아니라 비영리활동 영역에서도 적용된다. 폭발위험물질은 그것이 사전에 허용되어 있는 한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영리활동의 영역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라, 비영리활동의 영역에 관하여는 제27조에 따라 허가를 필요로 한다. 그 외에 폭발위험물질에의 관계종사자는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제20조에 따른 자격증명서를 갖추어야 하고, 폭발위험물질의 창고에의 보관을 위하여는 제17조에 따른 허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허가, 증명서, 자격증명서의 발급요건과 절차, 거부사유에 대한 규정에 더불어 제34조는 그 취소 및 일반 철회사유, 개별 철회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폭발물법은 유럽공동체 지침에 상응하여 새로운 폭발위험물질을 발견, 심사, 공표하는 공식기구를 두고 있는 바, 제 44,45조에 따라 BAM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진수

(해외입법조사위원,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